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6일, 이철규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11조·제15조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는 1988년부터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비경제탄광의 정비대책을 담은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

을 발표·추진하여 왔고, 지난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한 것을 끝으로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 공식적으로 조기 폐광되었음.

그런데,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폐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석탄산업이 위치했던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기존 폐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정안 이외에도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별도 규정 및 제도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실제로, 「환경보건법」 제6조제1항제7호¹⁾은 ‘폐광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제2호²⁾는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로 인한 광

1) 「환경보건법」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2) 「토양환경보전법」

산공해방지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 시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의 ‘폐광지역’과 개정안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총 7건³⁾의 법률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법률 제명에 맞게 수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별소비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